

#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.

- 1)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- 2)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
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

- 1)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위 규정에 따라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평가 대상 : 금천일자리주식회사

나. 평가 내용

- 1) 금천일자리주식회사(2021년도 실적) 기관 경영평가
- 2) 금천일자리주식회사(2021년도 실적) 대표이사 성과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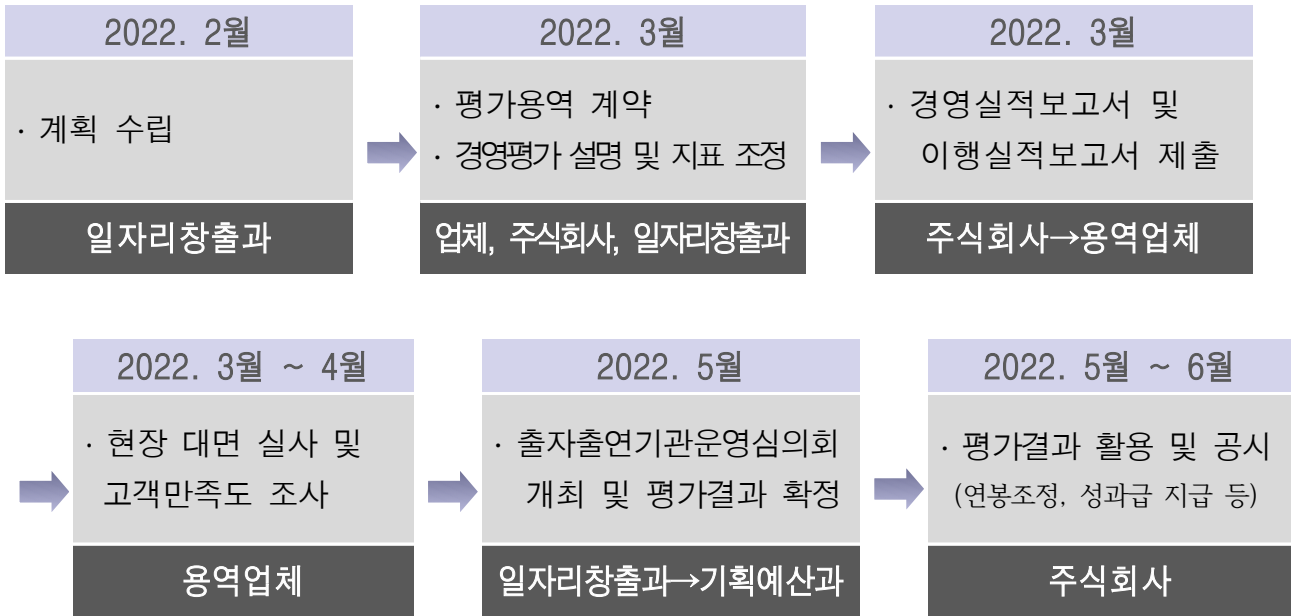
- 대표이사(임병호) : 2021.01.01. ~ 2021.12.31.

▶ 경영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후,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

다. 평가 방법 : 외부 전문기관 용역(수의계약)

- 1) 소요예산 : 12,777천원(구비)
- 2) 용역기간 : 2022. 3월 ~ 6월(약 4개월)

### 3. 평가일정표



### 4. 참고사항

가.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지표(안) - [붙임1]

나.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(안) - [붙임2]

다. 관계 법령 - [붙임3]

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
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6조

[붙임1]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기관」 경영평가 지표(안)

경영평가 지표(안)

평가영역	평가부문	평가지표	배점	
			정성	정량
I. 지속가능 경영 (25점)	리더십(12점)	경영층의 리더십	6	
		전략경영	6	
	경영시스템(13점)	조직·인사관리	6	
		재무관리	5	2
II. 경영성과 (45점)	주요사업(5점)	사업성과 적절성	5	
	수익성(8점)	영업수지비율		4
		자기자본이익률		4
	안정성(8점)	금융부채비율		4
		이자보상비율		4
	생산성(7점)	1인당 영업수익		4
		1인당 당기순이익		3
	성장성(7점)	매출액 증가율		4
영업이익 증가율			3	
고객만족 성과(10점)	고객만족도		10	
III. 사회적가치 (30점)	일자리 확대(10점)	일자리 창출 및 일·가정 양립	5	5
	사회적 책임(20점)	소통 및 참여	4	1
		윤리경영	2	
		인권경영	2	
		재난·안전관리	4	1
		지역상생발전	4	2
<b>총 점(100점)</b>			<b>49</b>	<b>51</b>

※ 행정안전부 「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」을 기초로 작성한 자료이며, 용역 착수 후 우리구 정책 방향 및 사업 실정에 맞는 지표로 조정 예정

[붙임2]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대표이사」 성과평가 지표(안)

단위목표	세부 평가지표	배 점
1. 책임경영 구현(10점)	①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이사의 리더십	5
	② 윤리경영 확립 및 투명성 제고	5
2. 고객만족 증진(10점)	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	4
	②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이사의 노력	3
	③ 민원발생 최소화	3
3. 경영수지 개선(10점)	① 영업매출 목표 달성도	5
	② 예산절감 목표 달성도	5
4. 사업관리(10점)	① 주요 사업 관리의 적절성	5
	② 신규사업 발굴 노력	5
5. 경영평가 결과(60점)	① 기관 경영평가 결과(점수환산)	60
<b>총 점(100점)</b>		<b>100</b>

## 관계법령

### 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####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# 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- 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  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  3. 전년도 결산서
  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 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제10조(평가의 종류)

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2.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3.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

### 제16조(평가의 활용)

-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